

#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7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
발 의 자 : 송명화, 권수정, 김기덕,  
김인호, 김정환, 김제리,  
김평남, 김희걸, 박기재,  
봉양순, 서윤기, 양민규,  
이광성, 이영실, 이태성,  
임종국, 전석기, 최 선,  
홍성룡 의원(1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,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,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신설(안 제3조의2)
- 나.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(안 제4조제2항제5호)
- 다.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16조제2항)
- 라.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에 공개함(안 제20조)
- 마.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(안 제 2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운영원칙) 성인지 예산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
2.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
3.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
4.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

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“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)”을 “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·평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분석을”을 “분석·평가를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수행”을 “수행 및 컨설턴트 양성”으로 한다.

제20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)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21조(표창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5. (생략)

제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 
결산서 분석 등) 시장은 매년  
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 
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 
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  
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하  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교육 및 컨설팅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  
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 
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  
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 
수 있으며, 컨설팅 수행에 필요  
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기준 등에 관한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제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 
결산서 분석·평가 등) -----  
-----  
----- 분석·평가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6조(교육 및 컨설팅) ① (현행  
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수행 및 컨설  
턴트 양성에-----.

제20조(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  
개)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  
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성인  
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 
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 
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21조(표창) 시장은 제6조에 따  
른 분석·평가 결과에 따라 성

제20조 (생 략)

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공  
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  
무원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 
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 
있다.

제22조 (현행 제20조와 같음)

문서번호	2021051800000030
------	------------------

## 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송명화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5.18	
회신일 : 2021.05.24	내용문의 : 02-2180-7943

###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

- 성인지 예산제 컨설턴트 양성 = 50,000천원
  - = 연간 컨설턴트 양성 비용×5년
  - = 10,000천원×5년

※ 연간 컨설턴트 양성 비용 :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의 ‘2021년 성평등정책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’ 예산 10,000천원 적용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사업평가팀장	이정수
예산분석관	박주용

☎ 02-2180-7943  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